

보상 계획 및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11호(2010. 4. 19)」로 「도시개발법」 제3조 및 동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147호(2014. 7. 7)」로 「도시개발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물건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가. 사 업 명 :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 나. 사업시행자 :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 다.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33-3번지일원
- 라. 면 적 : 524,562m²
- 마. 사 업 기 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9. 12. 31(환지처분일까지)

2. 보상대상 물건의 내역

물건조서의 상세내역은 물건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3. 열람장소 및 기간 등

- 가. 열람장소
 -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40-1, 2층(오류동)
(전화 : 032-567-3566, 전송 : 032-567-3565)
 -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개발과 (전화 : 032-560-4783)

- 나. 열람기간 : 2014년 9월 12일 ~ 9월 27일
(열람 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의신청 :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보상시기 : 2015년 1월 전후

개인별 보상대상 물건의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보상시기에 손실 보상협의 요청서를 개별통지 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액 산정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3인(다만, 관할 시장과 물건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또는 물건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체결 후 토지 등을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 감정평가업자 추천

동법 제6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물건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물건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물건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합니다.

6. 기타사항

가. 물건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물건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보상관련 공지사항은 조합 홈페이지(도메인 www.gumdan3.com) 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9 월 12일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장

